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관 신설 법안 심사 시 정부 의견 청취 및 기재위 협의 의무화〉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008호)

2021. 4.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일영 · 김교홍 · 김수홍 · 김진애 · 송기현 · 양정숙
윤후덕 · 이광재 · 이탄희 · 최기상 · 허종식 · 홍성국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1. 3. 22.

3. 회 부 일 : 2021. 3. 23.

※ 의안번호 : 900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설립과 운영에 상당한 국고가 소요되며 대규모 인력 및 시설이 요구되는바 공공기관 간 기능의 유사·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간에 이미 개방되어있거나 시장경합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등을 공공기관 신설을 통해 공적 부분에서 독점하게되면 민간분야를 위축시켜 민간분야 위축 및 시장기능 왜곡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입법부 내 국회의원 발의 법안·정부 제출 법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구 사업 민원 해소 또는 주무부처의 암묵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기관 신설법안의 발의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법안이 가결되어 기관이 신설되거나 분절되는 경우가 늘어나 2007년 298개였던 공공기관은 현재 340여 개에 이르고 있고 신설기관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은 기존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과도한 중복 신설을 예방하고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을 충실화하여 제도·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설 및 운영을 통일적으로 조율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 근거가 있는 국고 수반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이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또는 정부 내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된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재정 당국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되도록 하며, 그 법률안을 심사 또는 제안하는 위원회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공기관¹⁾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문위원은 이러한 정부 의견을 검토보고에 포함하도록 하며, 사전에 기관 신설 타당성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정안 주요내용
<신 설>	□ 기관 신설 관련 법률안 심사 시 정부 의견 청취 및 기재위와의 협의 의무화(안 §83의3) ○ 다음의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제안하는 위원회는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은 이를 검토보고에 포함(①) -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 정부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30/10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 위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제안하는 위원회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②)

- 1) 개정안은 기관 신설 시 정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기관을 나열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 대상과 그 범위가 사실상 동일하여 보고서상에서는 이를 공공기관이라고 기술하였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최근 여러 위원회에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음²⁾. 공공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공적(公的) 영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 여타 공공기관과의 업무 중복 여부 및 기관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소관 부처 중심으로 의견 반영이 이루어져 관계 부처 전체에 대한 의견 수렴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정당국의 이견을 이유로 그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사례³⁾가 있기도 하였음. 이를 고려할 때, 위원회가 사전적으로 재정·공공기관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기관 신설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법안에 대한 충실한 위원회 심사를

2)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관 신설 관련 주요 법안 목록

위원회	법안명	신설 기관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	국회영토영해연구원
행정안전위원회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발전연구진흥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교육위원회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게임진흥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비대면중소벤처기업진흥원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

3) 20대 국회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692)에 대해 별도의 기관 신설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였음(2018. 2. 21.).

법제사법위원회는 기관 신설에 대한 재정당국의 이견을 감안하여 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기관 신설이 아닌 기존 연구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계 부처의 의견이 해소되어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였음(2020. 4. 29.).

도모하기 위해 두 단계의 검토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재정당국 등 정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를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도 총괄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 신설의 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 시에는 현행법에도 정부 의견 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제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도 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먼저, 「국회법」 제58조제7항4)은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신설 법안은 이에 해당하는 안건이므로 동 조항에 따라 현재도 공공기관 신설 법안 심사 시 위원회는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⁵⁾. 공공기관 신설 법안에 대한 각 위원회의 일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음⁶⁾.

4)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⑦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한편 정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회에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한 통일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조직·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 또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조정기관의 조정을 신속히 거쳐 국회의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의 심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법」은 제83조7)에서 안전의 관련위원회 회부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신설 법안에 대해 관련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각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016

6) 기관 신설 주요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관계부처 의견 내용(법안 소관부처 의견은 제외)

법안명	신설 기관	검토보고서 중 관계 부처 의견
국회영토영해연구원 법안	국회영토영해 연구원	o(기획재정부) 영토·영해 및 관련 역사에 대한 조사·연구는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어 별도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이 부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한국재난안전 산업진흥원	o(기획재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해 연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제품인증 등이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추후 진흥원 설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발전연구 진흥원	o(기획재정부) 향후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운영 계획 안 마련 필요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비대면중소벤 처기업진흥원	o(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으로 별도의 조직 신설 불필요
한국중소기업판로지 원공사법안	한국중소기업 판로지원공사	o(기획재정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공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낮음 o(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와 업무 중복 문제 발생 우려

7) 「국회법」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전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전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그 안전을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전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전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3조의3(기관 신설 관련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 또는 제안하는 위원회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 또는 제안하는 위원회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위원회와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6)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3)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3)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21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18)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엠씨에스(주)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18)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환경부) 한국공공조직은행,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위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잡월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